201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

1. 총 칙

□ (목적)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중 '1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

□ (추진체계)

- 정부(산업통상자원부): 정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결정, 사업계획 변경 승인
- 교부기관(전력기반센터) : 자금 교부 및 관리
-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 : 사업집행 지원, 총괄 관리, 다음년도 국비지원(안) 수립
- 주관기관(지방자치단체) : 사업계획 수립, 세부내역사업 수행, 광역 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 관리·감독 및 총괄
- □ (지원대상)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

저소득층	복지시설	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종류) 중	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	
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	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	

- □ (지원제외)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
 -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
 -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
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(국비, 지방비, 자비, 후원 등)
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,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- □ (지원조건) 총사업비 중 지방비 30%이상 부담

2. 기본 지침

- 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의거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」를 획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* 제품 구매시점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
 □ '16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 상 지방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집행
 □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'16년도 상반기 중 계약 체결 및 회계연도 내사업 종료 원칙
 □ 세부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
 - 위탁 시행 시 최종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수행
 - 신뢰성 있는 납품·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,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
- □ (세부사업의 변경)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'16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구분(저소득층, 복지시설)의 변경,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사업비 변경 등을 말함
 - 사업변경신청서[붙임2]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제출

< 변경신청 예시 >

- (사업구분 변경) 저소득층 → 복지시설, 복지시설 → 저소득층
- (사 업 비 변경)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
 - 저소득층(복지시설) 사업비 잔액 → 복지시설(저소득층) 사업비 증액

- □ (자금교부신청서 제출)
 - '16년도 자금교부신청서[붙임1,전산(e-호조)등록]를 교부기관(전력 기반센터)에 제출
 - 제출기한 : '16년 3월 4일(금)까지
 - 제출방법 :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

□ (추진현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)

-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주관기관(지자체)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
-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[붙임3] 양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15일(7월 15일, 다음 연도 1월 15일) 이내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제출
- 완료된 사업은 [붙임5, 붙임6] 양식에 의거 사업완료 1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제출

□ (사후관리 협조)

- 주관기관(광역지자체) 자체 사후관리
 - '16년도 상반기에 '15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 실시 후 '16년 6월 말까지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결과 송부
-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 현장 실태조사
 - '16년도 하반기에 '15년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추진 예정, 적극적 지원 요망
 -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 공동 추진 예정
 - * 자체 사후관리 점검 등

3. '16년도 국비 지원 신청

- □ 사업계획서 제출
 - '17년도 사업계획서[붙임7, 8, 9]를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제출
 - 제출기한 : '16년 4월 29일(금)까지
 - 제출방법 :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
 - 광역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[붙임9]를 정함에 있어 복지시설의 경우 국·공립, 법인, 단체시설을 개인시설(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시설 등)에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함

4. 사업 담당자

- □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안내
 - ㅇ 산업통상자원부
 - 에너지수요관리과 박장호 주무관 (044-203-5384, park470@korea.kr)
 - ㅇ 한국에너지공단
 - 에너지복지실 이윤경 차장 (031-260-4337, lyky@energy.or.kr)
 - 에너지복지실 김승환 직원 (031-260-4340, ks14@energy.or.kr)
 - ㅇ 전력기반센터
 - 사업총괄팀 정진영 차장 (02-6007-0327, jjypower@kepco.co.kr)

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

소관	시설종류	세부종류			
부처		생활시설	이용시설	관련법	
	노인복지시설	○노인주거복지시설 ○노인의료복지시설	○ 재가노인복지시설 ○ 노인여가복지시설 ○ 노인보호전문기관 ○ 노인일자리지원기관	「노인복지법」	
	복합노인복지시설	○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「노인복지법」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•운영 가능		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	
	아동복지시설	○ 아동양육시설 ○ 아동일시보호시설 ○ 아동보호치료시설 ○ 자립지원시설 ○ 공동생활가정	○ 아동상담소 ○ 아동전용시설 ○ 지역아동센터	「아동복지법」	
보건 복지부	장애인복지시설	○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○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○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○장애인단기 거주시설 ○장애인공동생활가정	○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○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○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「장애인복지법」	
	어린이집		○ 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	
	정신보건시설	○정신요양시설 ○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(주거)시설	○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	「정신보건법」	
	노숙인시설	○노숙인자활시설 ○노숙인재활시설 ○노숙인요양시설	○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○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○ 노숙인급식시설 ○ 노숙인진료시설 ○ 쪽방상담소	「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	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○ 결핵·한센시설	○ 사회복지관 ○ 상담보호센터	「사회복지사업법」	
	지역자활센터		○ 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	
	성매매피해지원시설	○일반지원시설 ○청소년지원시설 ○외국인여성지원시설	○ 자활지원센터	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	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상담소	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	
111	가정폭력보호시설	○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가정폭력상담소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	
여성 ·	한부모가족복지시설	○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,자립) ○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,자립)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) ○ 일시지원복지시설	○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	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	

*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

대상자별	형태		시설종류	소관부서	관련법령
		• ○주거	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		
노인	생활	•.	노인복지주택		
	0.5	○의료 -	노인요양시설	요양보험운영과	
		•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
		○재가	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 • 야간보호, 단기보		
	이용	호.	, 방문목욕) 노인복지관		
			도한속시된 경로당, 노인교실	노인정책과	
		○노인보호전문기관			
		○노인일자리지원기관		노인지원과	
		○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			
	, 11 - 1	○ 아동일시보	· 아동일시보호시설		
-1 =	생활	○ 아동보호치료시설		아동복지정책과	「아동복지법」
아동		○자립지원시]설		제52조
	1.0	○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		_	
	이용	○지역아동선		아동권리과	
			• 장애유형별 거주시설		
	, n =1	vn=1 .1 v1	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		
	생활	○생활시설	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● 장애인단기 거주시설		
			● 장애인공동생활가정		
			• 장애인복지관	장애인권익지원과	
장애인		 ㅇ 지 역 사 회	• 장애인주간보호시설		「장애인복지법」
0 11 12	이용 _	재활시설	•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심부름센터		제58조
			•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		
		○ 장애인의료	L재활시설		
		○직업재활	• 장애인보호작업장	장애인자립기반과	
		시설	• 장애인근로사업장		
		○ 장애인생신	[품판매시설 		「영유아보육법」
영유아	이용	○ 어린이집	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. 민간	보육기반과	제10조
	생활 이 조선 - 입	○정신요양시]설		
		○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			
			시설·주거제공시설·중독자재활시설·정신질환자 종합		[전기보기배
저기		시설			「정신보건법」
정신 질환자		○ 저시지하다	· - 사회복귀시설	정신건강정책과	제10조, 제15조 및 제16조
근선시			I 시외국귀시설 자 지역사회재활시설(주간재활시설, 심신수련시설, 공동		
			,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,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		× 11102
			, 이번보면 F 기업 #보기된, 이번보면 F 이번유면 # 신질환자 종합시설)		
		12, 01			
	생활	○노숙인자활시설 ○노숙인재활시설 ○노숙인요양시설		자립지원과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노숙인 등		○노숙인 종합지원센터 ○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○노숙인급식시설 ○노숙인진료시설 ○쪽방상담소			
	이용				
지역주민	이용	○사회복지관	<u> </u>	사회서비스자원과	「사회복지사업법」
기타시설	복합 ○ 결				
		○ 결핵·한센시설		질병관리본부 (에이즈·결핵관리과)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\vdash				「국민기초생활

참고 2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 및 제품 확인방법

- 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
 - (추진목적)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·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
 - (제도정의)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
 -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
 - (**사업대상**) 조명설비, 단열설비, 전력설비,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47개 품목
 - LED 인증 기자재명(품목)

LED교통신호등, LED유도등, **컨버터 외장형 LED램프**, **컨버터 내장형** LED램프,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, LED 보안등기구, LED 센서 등 기구,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, LED 가로등기구, LED 투광등기구, LED 터널등기구, 직관형 LED 램프, 문자간판용 LED 모듈,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(컨버터 내장형)

- □ 고효율에너지기자재(LED 조명기기) 인증 제품 확인 방법
 - ㅇ 한국에너지공단 (www.energy.or.kr)
 - → 에너지효율향상 → (즐겨 찾는 메뉴)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
 - → 홈페이지 (http://bpms.kemco.or.kr/efficiency_system)
 - → 고효율인증제도(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) → 제품 찾기
 - → 제품신고 및 검색(고효율인증제도) → 해당 품목 선택
 - (예)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선택 → 업체명 또는 모델명 입력
 - → 검색
 - * 하단에 **엑셀로 저장**을 누르시면 선택한 품목의 인증내용을 **엑셀** file로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음

(인증번호 / 업체명 / 모델명 / 용량 / 형식 / 공장주소1)